
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22. 5. 2.</p>		<h2 style="margin: 0;">양형위원회</h2>
	<p style="margin: 0;">문의</p>	<p style="margin: 0;">운영지원단장 범선윤 (☎ 031-920-5601)</p>

양형위원회 5/2(월) 제116차 회의 결과

[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: 향후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제117차 회의에서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]

1. 설정 범위 확대

- 처벌조항이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·추행죄(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),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·추행죄(형법 제305조 제2항)에 대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
- 성범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죄(아동학대처벌법 제7조)에 대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

2. 유형 분류 체계화

- ▣ 대유형 1. 일반적 기준 중 중유형 ‘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’와 중유형 ‘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’의 소유형을 법정형 변동을 반영하여 재분류
- ▣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 범죄는 행위 태양, 법정형, 조문 체계,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
 -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장애인(13세 이상) 의제추행과, ② 13세

이상 16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의 공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장애인(13세 이상) 의제간음/강제추행과 각각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

-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,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과 각각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
-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

3. 권고 형량범위 조정

- ▣ 법정형 변동,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 권고 형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

[01. 일반적 기준/ 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2	청소년 강간(위계·위력간음/유사성교 포함)	3년-5년6월 <u>2년6월 - 5년</u>	5년-8년 <u>4년 - 7년</u>	6년 - 9년
3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/ 주거침입 등 강간/ 특수강간	3년-5년6월 <u>3년6월 - 6년</u>	5년 - 8년	6년-9년 <u>7년 - 10년</u>

[01. 일반적 기준/ 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3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 특수강제추행	1년6월-3년 <u>2년6월 - 4년</u>	2년6월-5년 <u>3년 - 6년</u>	4년-7년 <u>5년 - 8년</u>
4	주거침입 등 강제추행	1년6월-3년 <u>3년6월 - 5년</u>	2년6월-5년 <u>4년 - 7년</u>	4년-7년 <u>6년 - 9년</u>

4. 양형인자 정비

■ 특별가중인자

- '성적 수치심'이라는 용어를 '성적 불쾌감'으로 변경
- 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」의 정의규정을 수정하여 적용 범위 확대

■ 특별감경인자

-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합의 관련 양형요소로서 「처벌 불원」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

■ 일반가중인자

- 「인적 신뢰관계 이용」의 예시를 추가하여 정의규정 보완

■ 일반감경인자

- 「진지한 반성」의 정의규정 신설하여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
- 「형사처벌 전력 없음」의 정의규정 신설하여 적용범위 제한

양형위원회(위원장 김영란)는 2022. 5. 2. 16: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어,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함.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1 주요 내용

1. 설정 범위

- 처벌조항이 신설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
 - ① 2019. 1. 15.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·추행(청소년성보호법 제 8조의2)

② 2020. 5. 19.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·추행(형법 제305조 제2항)

- 성범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추가설정(아동학대처벌법 제7조)

2. 유형 분류

- 대유형 1. 일반적 기준 중 중유형 ‘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’와 중유형 ‘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’의 소유형을 법정형 변동을 반영하여 재분류

- 다음 ① ~ ④ 각 범죄는 범죄의 위험성, 죄질과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, 법률 개정으로 해당 범죄들 사이 법정형 격차가 커짐. 이에 법정형을 기준으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재분류

[01. 일반적 기준/ 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]

유형	법정형	비고
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	7년↑	
② 주거침입 등 강간	무기, 7년↑(개정)	
③ 특수강간	무기, 7년↑(개정)	
④ 청소년 강간(위계·위력간음/유사성교)	무기, 5년↑ or 5년↑	별도 소유형으로 분류

[01. 일반적 기준/ 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]

유형	법정형	비고
①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	무기, 7년↑(개정)	별도 소유형으로 분류
②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	5년↑	
③ 특수강제추행	5년↑(개정)	
④ 청소년 강제추행(위계·위력 강제추행)	2년↑	별도 소유형으로 분류

-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·추행죄

- 행위 태양, 법정형, 조문 체계,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인

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·추행죄(청소년성보호법 제8조)와 동일한 중유형(01.의 다)으로 분류

[01. 일반적 기준/ 다. 장애인(13세 이상) 및 **궁박 청소년** 대상 성범죄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의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의제간음/강제추행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3	유사강간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4	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
▷ **청소년(13세 이상 16세 미만)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, 청소년(13세 이상 16세 미만)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**
(이하 생략)

○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·추행죄

- 행위 태양, 법정형, 조문 체계,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·강제추행죄(형법 제305조 제1항)와 동일한 중유형(01.의 라. 및 02.의 나.)으로 분류

[01. 일반적 기준/ 라.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(**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**)]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의제강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의제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3	강제추행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4	유사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5	강간	6년 - 9년	8년 - 12년	11년 - 15년

▷ **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,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**
▷ 의제유사강간(**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**)은 2유형에 포섭하되,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/3로 감경(이하 생략)

[02.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/ 나. 장애인(13세 이상) 또는 13세 미만 대

상 상해/치상(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의제강제추행	2년6월 - 4년	3년 - 5년6월	5년 - 8년
2	의제강간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3	강제추행	5년 - 8년	7년 - 11년	10년 - 14년
4	유사강간	5년 - 9년	8년 - 12년	11년 - 15년
5	강간	6년 - 10년	9년 - 14년	13년 이상, 무기

▷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,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

▷ 의제유사강간(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)은 2유형에, 위계·위력추행은 3유형에, 위계·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, 위계·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(이하 생략)

3. 권고 형량범위

-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, 주거침입 등 강간 및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변경

[01. 일반적 기준/ 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]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친족관계에 의한 강간/ 주거침입 등 강간/ 특수강간	3년 - 5년6월 <u>3년6월 - 6년</u>	5년 - 8년	6년 - 9년 <u>7년 - 10년</u>

- 법정형 하한이 7년인 성범죄[장애인(13세 이상) 대상 강간,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]의 권고 형량범위와 위 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상해/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조
-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씩,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년씩 상향
-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, 징역 15년까지 권고됨

○ 청소년 강간 권고 형량범위 변경

[01. 일반적 기준/ 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]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청소년 강간	3년—5년6월 <u>2년6월 - 5년</u>	5년—8년 <u>4년 - 7년</u>	6년 - 9년

▷ 청소년 위계·위력간음/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

-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성범죄[군인등강간, 장애인(13세 이상) 대상 유사강간,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]의 권고 형량범위[감경영역(2년6월 - 5년), 기본영역(4년 - 7년), 가중영역(6년 - 9년)]와 청소년 강간을 기본 범죄로 하는 상해/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[감경영역(3년6월 - 6년), 기본영역(5년 - 8년), 가중영역(7년 - 10년)] 등을 참조
- 종전 청소년 강간은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범죄의 기본영역과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모두 같은 형량이 권고되는 불균형이 있어 이를 시정
-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‘위계’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여(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5도9436 판결) 보다 다양한 행위태양이 존재할 수 있게 된 사정 고려

○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,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변경

[01. 일반적 기준/ 가. 강간죄(13세 이상 대상)]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 특수강제추행	1년6월—3년 <u>2년6월 - 4년</u>	2년6월—5년 <u>3년 - 6년</u>	4년—7년 <u>5년 - 8년</u>
주거침입 등 강제추행	1년6월—3년 <u>3년6월 - 5년</u>	2년6월—5년 <u>4년 - 7년</u>	4년—7년 <u>6년 - 9년</u>

-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, 법정형 하한이 같은 다른 성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고려

-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경우, 감경영역,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의 하한과 상한이 1년 6월 ~ 2년씩 대폭 상향되었고, 기본영역에서 **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짐**.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3년 6월까지 권고됨(중전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 6월까지 권고)
-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은 각 영역의 하한 및 상한이 6개월 ~ 1년씩 상향됨.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2년까지 권고됨(중전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 6월까지 권고)

4. 양형인자

▣ 특별가중인자

○ **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모두 ‘성적 불쾌감’으로 변경**

-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성범죄의 경우 ‘성적 수치심’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
-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,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
-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‘성적 불쾌감’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도록 함

○ 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」의 범위 확대

-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, 지도, 감독, 평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의규정을 수정

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, 연령,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, 서열 또는 지휘**감독**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, 피고

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.

■ 특별감경인자

-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합의 관련 양형요소로서 「**처벌 불원**」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, 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」 또는 「실질적 피해회복(공탁 포함)」 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
-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일반감경인자 「**상당 금액 공탁**」 은 「**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**」 으로 수정

■ 일반가중인자

- 실제 발생 사례를 예시로 추가하여 「**인적 신뢰관계 이용**」 의 정의규정 보완

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,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.

- 제자
- 지인의 자녀
- 환자
- 부하
- 신도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■ 일반감경인자

- 「**진지한 반성**」 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,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,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
- 「**형사처벌 전력 없음**」 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, 불특정

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,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신설

5. 집행유예 기준

-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'피고인이 고령'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,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삭제

2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(제117차 회의)

- 일시 : 2022. 7. 4.(월) 오후
- 장소 및 방식 : 대법원 회의실 대면 회의(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)
- 안건 :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